

1. 제안이유

대규모 행사 개최 시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7786호, 2020. 12. 29. 공포, 2021. 12. 30. 시행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대규모 행사 시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확보 등의 응급의료 준비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응급의료 준비사항(제41조의2)

법률에서 위임된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배치 기준 명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진행 예정

3) 규제심사 전

보건복지부령 제 호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1조의2(대규모 행사 개최 시 응급의료 준비사항)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법 제54조의3에 따라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를 배치하여야 한다.

1. 응급구조사 또는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사 및 간호사 중 1명 이상
2.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구급차등 1대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신설>	제41조의2(대규모 행사 개최 시 응급의료 준비사항)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법 제54조의3에 따라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를 배치하여야 한다. 1. 응급구조사 또는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사 및 간호사 중 1명 이상 2.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구급차 등 1대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	
연락처	(044) 202 - 2556

부칙

이 규칙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